**[NAME] 님: 귀하는 캘더론 대 Public Partnerships LLC 사건의 집단소송 화해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**

귀하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 언제든지 뉴욕시, 나소 카운티, 서퍽 카운티 및/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(통칭 "다운스테이트 개인 활동지원인")에서 CDPAP의 일환으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주 전역 재정 중개기관인 PPL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,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화해와 귀하의 권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**www.PublicPartnershipsSettlement.com**에서 확인하시거나 1-800-314-2601로 전화해 주십시오

*이 통지서는 뉴욕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*

통지 ID: <<Notice ID>>